



윤재갑 부이사관 장례식 특허청 장(葬)으로 거행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근무하다 지난 11월 14일 새벽 순직한 윤재갑 부이사관의 장례식을 특허청 장(葬)으로 거행하였다.


이는 특허행정 정보화분야에 큰 기여를 한 고 윤 부이사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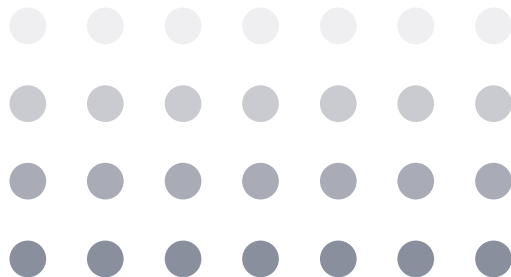
이에 따라 11월 21일(금) 거행된 장례식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의전담당인 엑스타인(Mr. Guy ECKSTEIN)국장이 특별히 참석하여 WIPO 사무총장의 조사를 대독하였다.

윤 부이사관은 1985년도 기술고시에 합격한 이후 국방부, 상공부 등을 거쳐 1993년도부터 특허청에서 근무하면서 1999년 1월 세계 최초로 산업재산권 (특허·실용·의장·상표) 출원, 전수, 심사, 등록 및 공보발간 업무를 완전 자동화한 특허넷시스템 개발을 주도하는 등 특허행정 정보화분야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그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보급, 출원서류의 전자화 및 특허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선행기술 조사를 담당하도록 한국특허정보원을 설립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민원인이 한번의 전화로 산업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특허청 헬센터, 사이버 상에서 누구나 무료로 고품질의 지재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특허 아카데미를 기획하는 등 특허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왔다.

고 윤 부이사관은 2002년 3월부터 한국정부에서 제공하는 기금으로 WIPO의 중소기업국에서 근무해 왔는데, 업무 처리 능력과 특허청 근무 당시 전산화 개발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지난 10월 WIPO 고위직인 P5급(국장인 D급 1)로 아래 직급에 발탁되었으며, 특허협력조약(PCT) 전략경영국의 기획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특허 수수료 체계, 쉽고 간단해진다. - 징수규칙전문개정 및 수수료 감면 확대

특허청은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징수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은 '98. 1월 수수료 인상이후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첫 개정으로 그간 특허청은 새로운 제도시행 등에 따른 기본적인 개정을 한적은 있으나 전면적인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수수료 인상이 없이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수수료 체계와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데 있다.


현행 수수료 징수규칙은 각각의 수수료가 일정한 규칙없이 배열되어 있어 출원인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 항목을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신청방식도 등록료는 3항초과 1항당 가산료를 받고 심사청구료는 1항초과 1항당 가산료를 받는 등 서로 상이하여 출원인이 혼동할 우려가 많고 체계가 너무 복잡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있어왔다.

이번 수수료 징수규칙개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총 수수료 수입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면서 출원인의 편의 증진에 주안점을 두어 ▲ 특허관련 수수료, 실용신안관련 수수료, 의장관련 수수료, 상표관련 수수료 등 권리별로 관련 수수료를 분류하고 ▲ 각각의 권리별 수수료를 산업재산권 절차에 따라 출원관련 수수료, 등록관련 수수료, 심판관련 수수료로 나누어 출원인이 쉽게 필요한 수수료 조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 신청방식을 개선하여 20면초과, 1항초과, 3항초과 등 가산료 산정시 기본면 및 기본항을 폐지하고 모든 면 또는 항마다 가산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가산료는 인하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변리사 등의 도움이 없이도 쉽게 수수료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과오납 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전자분서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전자출원시 면가산료를 없애고 기본료만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보정료, 심판청구료 등도 전자분서 이용시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출원서류의 양이 특히 많은 유전공학관련 출원인의 출원료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개인 및 소기업에 대한 출원료 등의 70% 감면과 중기업에 대한 50% 감면을 상시화하여 감면제도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국·공립대학이 소유한 특허권 등을 전담조직에 이전시 이전등록료 및 출원인변경신청료를 면제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였다. 

한·중·일, 3국간 특허협력 본격 추진

하동만(河東萬) 특허청장은 11월 14일(금) 10:00~12:00, 중국, 베이징에서 왕 징추안(Wang, Jingchuan) 중국 특허청장 및 야스오 이마이(Yasuo IMAI) 일본 특허청장과 제3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3국 공동웹사이트 개발 등 3국간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에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공동웹사이트 개발,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지적권관리에 관한 공동세미나 개최, 3국 기술동역어 사전 개발 및 특허심사정보의 교환 등으로, 이로서 3국은 특허심사결과 상호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이번 제3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회담은 3국간 특허행정 협력에 있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향후 동북아시아 특허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여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11월 13일(목) 개최된 제9차 한·중 특허청장회의에서는 지적권 보호관련 세미나 개최 등 지적권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공동선행기술조사, 심사관 교류 및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등을 추진하기로 양청간 합의하였다.

특히, 이번 합의된 공동선행기술조사 및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사업은 양청 심사에 대한 상호신뢰 증진 및 출원인의 편의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河청장은 11월 13일(목) 오후,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을 방문하여 간 구오희(甘國驛) 수석부총국장을 만나, 최근 중국에서 우리기업 상표권에 대한 침해사태가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기업의 지적권보호에 대하여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였다.

특히 상표권 보호를 위해서 중국 상표국과 한국 특허청간 고위급 및 실무회담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정기적인 교류협력 채널이 구축되었다.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분쟁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만히 해결해 주도록 촉구한 것은, 현재 중국 내에서 우리기업의 유명상표의 침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우리기업 지적권보호를 위하여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 기관간 심사관 교류 등 상표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제(PCT)출원 후 특허 획득 가능성을 조기에 알 수 있다.

내년부터는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해 특허출원을 한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보다 더 빨리 알 수 있게 된다.


국제출원제도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각각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하나의 출원서만으로 이들 국가에 모두 출원한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로서, 특허협력 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주관하여 1978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다.

국제출원을 하면 먼저 지정된 국가의 특허청에서 국제조사(International Search)와 출원인이 희망할 경우 국제예비심사(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를 하게 되는데, 국제조사단계에서는 동일한 기술(선행기술이 이미 존재하는지를 조사하게 되고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는 출원된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국제단계), 출원인은 이러한 단계를 거친 후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특허청으로부터 개별적인 심사를 받게 된다(국내단계).

특허청에 따르면 WIPO에서는 그동안 지나치게 복잡한 국제출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그 중 하나로 국제조사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만 하던 것을 현재는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하고 있는 특허성 판단까지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원인은 국제조사결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국제조사결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출원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국제출원을 취하함으로써 출원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국제조사결과 특허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본제점을 보정한 후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여 특허성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특허청에서는 본 조약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수료반환절차 개선 안내

수수료반환과 관련된 반환신청, 확인절차 등이 2006.12.1일부터 개선됩니다.

㉠ 주요내용

- 홈페이지를 통한 반환대상건의 실시간 조회, 신청 및 처리결과 제공 서비스 개시
- 반환청구기간의 만료 예고 통지 실시

㉡ 서비스 이용방법

1. 반환신청 및 처리결과 제공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하신 경우>

가. 반환신청

- '특허청 홈페이지(ip.go.kr)' >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 > '특허수수료반환' 코너 선택, 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특허수수료반환' 선택
- 해당 코너에서 '전자문서이용신고'의 반환신청' 선택하여 로그인
- 로그인하신 후에 해당되는 수수료반환대상리스트가 화면에 제공
- 반환대상리스트에서 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 선택(전수번호, 좌측의 체크박스 클릭)
- 계좌정보 은행 및 계좌번호 입력
 -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화면 하단의 '동일계좌' 선택
 - 최초신청 또는 계좌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 및 계좌번호 입력.
 - 스캐닝한 통장 사본 이미지 첨부
- 전송버튼 클릭

나. 반환신청 처리결과 조회

- '특허수수료반환' 코너에서 '전자문서이용신고자 반환신청처리조회' 선택하여 로그인
- 로그인한 후에 해당되는 신청내역 및 처리상태가 화면에 제공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반환신청

- '특허청 홈페이지(ip.go.kr)' >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 > '특허수수료반환' 코너 선택, 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특허수수료반환' 선택
- 해당 코너에서 '전자문서이용미신고자의 반환신청' 선택하면 수수료반환신청서 입력 양식이 화면에 제공
- 기재항목 입력, 신규신청 또는 계좌변경시 통장사본 이미지 첨부
- 전송버튼 클릭
- 나. 신청결과 조회

- '특허수수료반환' 코너의 '전자문서이용미신고자 반환신청 처리조회' 선택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인자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2. 수수료반환신청만료예고통지

- 수수료반환청구만료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년 이상이 1개월 남은 전에 대하여 문서로 이용해 제정지

㉢ 주의사항

- 최초반환신청시 또는 계좌변경 시에는 반드시 통장사본 첨부
- 통장사본은 온라인 뿐만아니라,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제출가능

㉣ 문의처

- 특허청 콜센터: 1544-8080
- 절차 및 제도문의 : 총무과 신용전: 042-461-5022
- 시스템 오류 및 개선 : 정보개발과 최일승사무관: 042-461-5004



21세기에는 스마트 카드 한 장이면 만사 OK!

정보화사회 진입으로 상품 및 서비스구매는 물론 금융·보안·통신·일반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는 스마트 카드가 21세기를 이끌어갈 핵심기술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며 관련 특허 출원 건수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카드는 마이크로프로세서(CPU), 메모리 및 운영체제(OS)를 IC칩 형태로 한 개의 카드 내에 내장한 카드로서, IC칩에 기록된 개인정보의 암호처리가 가능해 보안성이 높고,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의 처리, 저장 및 수정이 가능하고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의 적용이 가능해 응용성이 뛰어나며, 휴대성이 우수한 카드이다.

스마트 카드의 세계시장은, 1999년에 15억매가 출하되었으며 2004년에 40억매 돌파가 예상되어 5년간 약 27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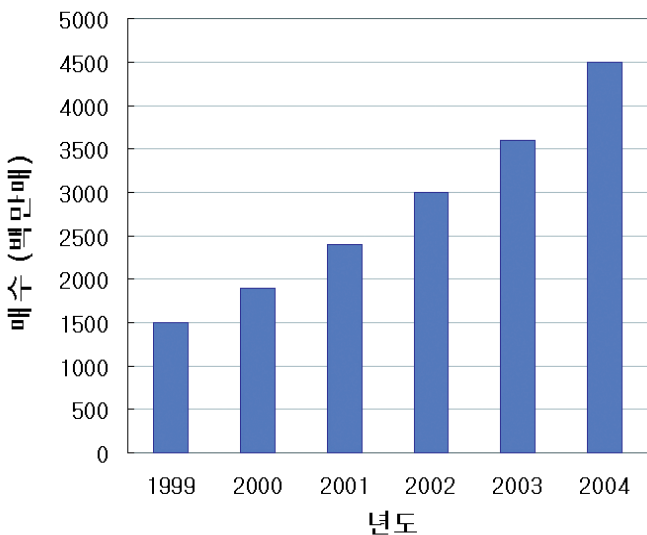
44%, 미국 40%, 일본 4%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실은 스마트 카드 기술이 1968년부터 유럽에서 시작되어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2> 스마트 카드의 내·외국인별 출원동향

(단위 건수)

출원년도(년)	내국인	외국인	합계
1991이전	3	8	11
1992	3	2	5
1993	5	3	8
1994	8	6	14
1995	52	7	59
1996	62	11	73
1997	75	26	101
1998	41	22	63
1999	50	45	95
2000	100	53	153
2001	178	50	228
2002	268	52	320
합계	845	285	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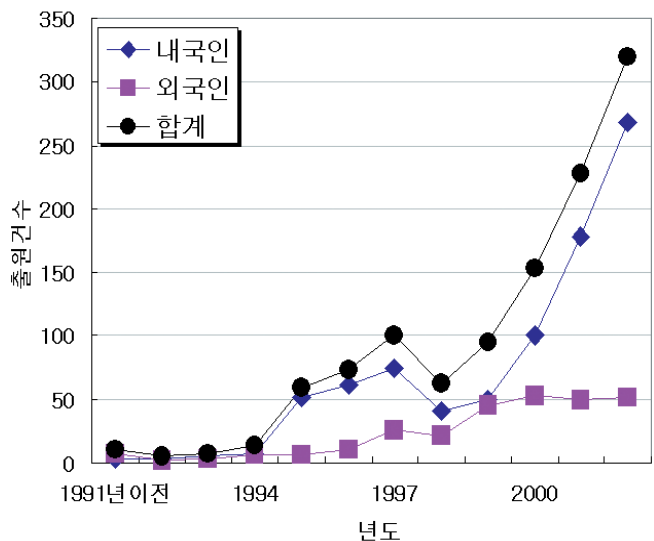
<표1> 스마트 카드의 세계시장현황



특허출원동향을 보면,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지속적인 출원 증가세이며, 국내에 출원된 총 1,130건 중 외국인 출원은 285건, 내국인 출원은 845건으로 2000년부터 내국인 출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국내벤처기업들의 활발한 연구 성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출원을 국가별로 보면, 유럽(프랑스, 독일, 영국 순)

출원인별 출원동향



〈표3〉 스마트 카드의 출원인별 출원동향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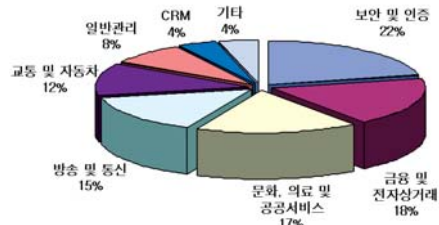
출원년도(년) 기관		1997 이전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국내	대기업 D사	53	19	0	0	0	0	72
	대기업 S사	36	7	6	2	8	5	64
	대기업 L사	13	2	7	6	13	8	49
	벤처기업 B사	0	0	0	0	0	38	38
	정부기관 E연구소	9	0	3	6	11	1	30
	대기업 H사	2	1	2	2	6	0	13
	벤처기업 K사	0	0	0	2	2	9	13
	벤처기업 KB사	0	0	1	1	2	7	11
	기타기업 및 개인	95	12	31	81	136	200	555
	소계	208	41	50	100	178	268	845
외국	I사	2	2	8	4	3	0	19
	P사	4	0	4	5	3	2	18
	S사	2	5	3	1	1	1	13
	T사	0	0	0	2	3	5	10
	M사	5	0	0	5	0	0	10
	B사	1	0	0	2	6	1	10
	기타	49	15	30	34	34	43	205
	소계	63	22	45	53	50	52	285
	합계	271	63	95	153	228	320	1,130

〈표5〉 스마트 카드의 응용기술의 출원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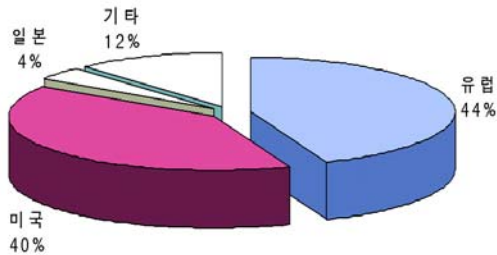
(단위 건수)

출원 년도 (년)	보안 인증	금융 전자상 거래	문화 의료 공공	방송 통신	교통 자동차	일반 관리	CRM	기타	합계
1997 이전	16	2	6	37	10	4	0	6	81
1998	5	2	1	6	2	0	0	2	18
1999	4	3	3	8	3	3	1	4	29
2000	17	23	11	6	1	9	2	2	71
2001	31	18	23	7	21	9	5	0	114
2002	35	41	42	9	22	15	12	7	183
합계	108	89	86	73	59	40	20	21	496

응용기술 분야



〈표4〉 스마트 카드관련 외국인 출원의 국가별 출원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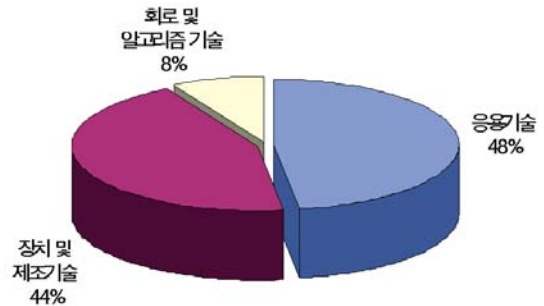


관련 기술개발동향을 특허출원 비중으로 분석하여 보면, 보안·인증분야가 22%, 전자화폐 등의 금융·전자상거래 분야가 18%, 예약서비스 등의 문화·의료·공공서비스 분야가 17%, 방송·통신 분야가 15%, 교통·자동차 분야가 12%, 일반관리 분야가 8%, 포인트·마일리지 서비스 등의 고객관리(CRM) 분야가 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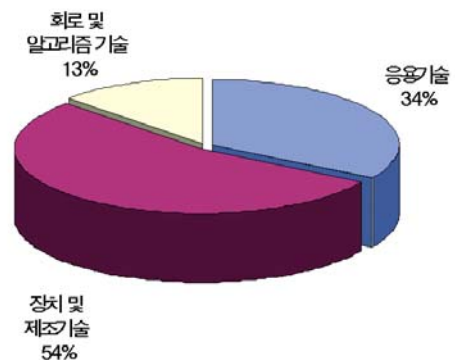
또한 국내기업은 응용기술 분야에서, 외국기업은 회로·알고리즘 기술 분야 및 장치·제조 기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건수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스마트 카드의 출원인별 기술동향


내국인출원



외국인출원



향후 스마트 카드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속도의 증가, 메모리 용량의 증가,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사회전반에 걸쳐 그 응용분야가 확대될 것이며, 21세기는 스마트카드 한 장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기업은 반도체, 통신의 앞선 기술력과 뛰어난 IT인력을 이용하여 스마트 카드 관련기술 분야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로·알고리즘 기술 및 장치·제조 기술 분야의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 및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IPRIS 검색가능 최종 데이터 현황

(2003.12.4 현재)

구 분	종 류	기 준 일	정보제공범위	구 분	종 류	기 준 일	정보제공범위
특 허 / 실 용	공개서지	공 개 일	2003. 11. 28	의 장	등 록	공 고 일	2003. 11. 24
	공고서지	공 고 일	2003. 11. 28		공개(조기)	공 개 일	2003. 11. 28
	초 록	공 보 일	2003. 11. 28	심 판	1심 ~ 3심	청 구 일	2003. 11. 20
	전문이미지	공 보 일	2003. 11. 28	4권리	등 록	등 록 일	2003. 12. 3
상 표	서지/이미지	방식심사일	2003. 12. 3	4권리	중간처리	서류접수일	2003. 12. 3
특 허	생명공학	출 원 일	1980 ~ 2002	특 허	KPA	등록·공고	1979.1 ~ 2000.10
						특허공개	2000.1 ~ 2003. 5

Patent 21 2003년 11월호

(통권 제53호)

등록번호: 서울 라09257
 발 행: 한국특허정보원
 발행 및 편집인: 유영기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편집위원: 이종익, 이새정, 강치훈, 노성열, 배성호
 기 획: 최승중
 광고문의: 기획팀 (02-3452-8144)
 너 자 인: IIX (02-3445-9849)
 인 쇄: 세종예술기획

특허기술정보서비스 : www.kipris.or.kr

선행기술조사서비스 : www.forx.org



전화 : (02)3452-8144 FAX : (02)3453-5951